
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(6·8공구)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99호(2010.5.11)

1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| 구 | 분 | 면적(㎡) | | | 구성비 (%)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
| 합 계 | | 2,579,367 | 3,250,079 | 5,829,446 | 100.0 |
| 주거 지역 | 소 계 | 1,520,888 | 742,688 | 2,263,576 | 38.9 |
| | 제1종일반주거지역 | - | 207,413 | 207,413 | 3.6 |
| | 제2종일반주거지역 | 1,420,492 | △ 1,022,576 | 397,916 | 6.8 |
| | 제3종일반주거지역 | - | 1,118,766 | 1,118,766 | 19.2 |
| | 준주거지역 | 100,396 | 439,085 | 539,481 | 9.3 |
| 상업 지역 | 소 계 | 78,935 | 785,736 | 864,671 | 14.8 |
| | 중심상업지역 | - | 180,834 | 180,834 | 3.1 |
| | 일반상업지역 | - | 683,837 | 683,837 | 11.7 |
| | 근린상업지역 | 78,935 | △ 78,935 | - | - |
| 녹지 지역 | 소 계 | 979,544 | 1,721,655 | 2,701,199 | 46.3 |
| | 자연녹지지역 | 979,544 | 1,721,655 | 2,701,199 | 46.3 |

2.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○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| 구 분 | 도면 표시 번호 | 구 역 명 | 위 치 | 면적(㎡) | |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
| 신설 | ㉑ | 송도랜드마크시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|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68공구일원 | - | 증 5,829,446 | 5,829,446 | |

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(변경)

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규모 | | | | 기능 | 연장 (m) | 기점 | 종점 | 사용형태 | 주요 경과지 | 비고 |
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|
|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| | | | | | | |
| 기정 | 광로 | 1 | 1 | 100 | 주간선 | 12,896 | 15호광장 | LNG 인수기지 | 일반도로 | | |
| 변경 | 광로 | 1 | 1 | 100 | 주간선 | 3,875 | 15호광장 | 대로송2-1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광로 | 1 | 송1 | 100 | 주간선 | 3,820 | 6·8공구 15호근린공원 | LNG 인수기지 | 일반도로 | | |
| 기정 | 대로 | 1 | 3 | 35 | 주간선 | 10,374 | 광로2-9 | 광로3-10 | 일반도로 | | |
| 변경 | 대로 | 1 | 3 | 35 | 주간선 | 9,529 | 광로2-9 | 광로2-14 | 일반도로 | | |

나. 공간시설(변경)

○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공원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변경 | 23 | 공원 | 근린공원 | 송도지구 | 2,940,368.8 (118,197) | 감 118,197 | 2,822,171.8 (0) | 2000.1.4 | |
| 변경 | 24 | 공원 | 근린공원 | 송도지구 | 1,309,408 (2,371) | 감 2,371 | 1,307,037 (0) | 2000.1.4 | |

※ ()는 지구내 면적임

다. 방재시설(변경)

○ 우수지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변경 | 1 | 우수지 | 우수지 | 송도지구 | 2,477,882 (118,197) | 감 118,197 | 2,359,685 (0) | 2000.1.4 | |
| 신설 | 3 | 우수지 | 우수지 |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6.8 공구 내 | - | 증 731,865 | 731,865 | | |

※ ()는 지구 내 면적임
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(6·8공구)

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99호(2010.5.11)

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

○ 도로 총괄표

| 구 분 | 합계 | | | 1류 | | | 2류 | | | 3류 | | | 기타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노선수 | 연장 (m) | 면적 (㎡) | 노선수 | 연장 (m) | 면적 (㎡) | 노선수 | 연장 (m) | 면적 (㎡) | 노선수 | 연장 (m) | 면적 (㎡) | 면적 (㎡) | |
| 합계 | 34 | 20,353 (5,020) | 642,655 (217,510) | 14 | 7,780 | 223,695 | 9 | 7,831 (1,671) | 239,499 (83,550) | 11 | 4,742 (3,349) | 131,678 (133,960) | 47,783 | |
| 면 적 단 위 | 소계 | 34 | 20,353 (5,020) | 594,872 (217,510) | 14 | 7,780 | 223,695 | 9 | 7,831 (1,671) | 239,499 (83,550) | 11 | 4,742 (3,349) | 131,678 (133,960) | - |
| | 광로 | 2 | 2,357 (5,020) | 106,970 (217,510) | - | - | - | 1 | 1,269 (1,671) | 63,450 (83,550) | 1 | 1,088 (3,349) | 43,520 (133,960) | - |
| | 대로 | 11 | 10,848 | 351,258 | 3 | 3,666 | 131,976 | 2 | 4,228 | 139,524 | 6 | 2,954 | 79,758 | - |
| | 중로 | 20 | 7,073 | 135,894 | 10 | 4,039 | 90,969 | 6 | 2,334 | 36,525 | 4 | 700 | 8,400 | - |
| | 소로 | 1 | 75 | 750 | 1 | 75 | 75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기타 | - | - | 47,783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

※ 1.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, Bus Bay 등 면적임

2. ()는 도로 전체 연장 또는 면적임

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규모 | | | | 기능 | 연장 (m) | 기 점 | 중 점 | 사용형태 | 주요 경과지 | 비 고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|
|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| | | | | | | |
| 기정 | 광로 | 2 | 14 | 50 | 주간선 | 397 (799) | 대로1-41 | 65호 교통광장 | 일반도로 | | |
| 변경 | 광로 | 2 | 14 | 50 | 주간선 | 1,269 (1,671) | 대로1-3 | 65호 교통광장 | 일반도로 | | |
| 기정 | 광로 | 3 | 29 | 40 | 주간선 | 355 (2,616) | 광로2-12 | 대로1-3 | 일반도로 | | |
| 변경 | 광로 | 3 | 29 | 40 | 주간선 | 1,088 (3,349) | 광로2-12 | 6·8공구경계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1 | 송1 | 36 | 보조간선 | 406 | 광로2-14 | 광로3-29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1 | 송2 | 36 | 보조간선 | 798 | 광로2-14 | 대로2-송1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1 | 송3 | 36 | 보조간선 | 2,462 | 대로2-송1 | 대로2-송1 | 일반도로 | | |
| 폐지 | 대로 | 1 | 41 | 35 | 주간선 | 197 | 광로2-14 | 대로1-3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2 | 송1 | 33 | 보조간선 | 4,115 | 6·8공구경계 | 광로1-1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2 | 송2 | 33 | 집산도로 | 113 | 대로1-송2 | 중로1-송3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3 | 송1 | 27 | 집산도로 | 2,031 | 대로2-송1 | 대로2-송1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3 | 송2 | 27 | 집산도로 | 225 | 대로1-송2 | 6·8공구경계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3 | 송3 | 27 | 집산도로 | 216 | 대로1-송2 | 중로1-송3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3 | 송4 | 27 | 집산도로 | 155 | 대로2-송1 | 대로3-송1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3 | 송5 | 27 | 집산도로 | 149 | 대로2-송1 | 대로3-송1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대로 | 3 | 송6 | 27 | 집산도로 | 178 | 대로2-송1 | 대로3-송1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1 | 23 | 집산도로 | 415 | 광로3-29 | 광로3-29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2 | 23 | 집산도로 | 250 | 광로2-14 | 광로3-29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3 | 23 | 집산도로 | 901 | 광로2-14 | 대로2-송1 | 일반도로 | | |

※ ()는 도로 전체 연장임

| 구분 | 규모 | | | | 기능 | 연장 (m) | 기 점 | 종 점 | 사용형태 | 주요 경과지 | 비 고 |
|----|----|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|
|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| | | | |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4 | 23 | 집산도로 | 774 | 대로3-송1 | 중로1-송3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5 | 23 | 집산도로 | 109 | 대로2-송1 | 중로1-송4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6 | 23 | 집산도로 | 100 | 대로2-송1 | 중로1-송4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7 | 23 | 집산도로 | 120 | 대로2-송1 | 중로1-송4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8 | 23 | 집산도로 | 114 | 중로1-송4 | 151인천타워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9 | 21.5 | 집산도로 | 1,227 | 대로2-송1 | 대로1-송3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1 | 송10 | 20 | 국지도로 | 29 | 중로2-송2 | 부지경계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2 | 송1 | 18 | 집산도로 | 505 | 대로2-송1 | 대로2-송1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2 | 송2 | 15 | 집산도로 | 1,312 | 대로1-송3 | 대로1-송3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2 | 송3 | 15 | 집산도로 | 126 | 대로1-송3 | 중로2-송2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2 | 송4 | 15 | 집산도로 | 170 | 대로1-송3 | 중로2-송2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2 | 송5 | 15 | 집산도로 | 70 | 대로1-송3 | 골프장부지 경계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2 | 송6 | 15 | 국지도로 | 151 | 중로1-송9 | 초등학교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3 | 송1 | 12 | 집산도로 | 69 | 대로1-송3 | 골프장부지 경계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3 | 송2 | 12 | 국지도로 | 30 | 중로3-송3 | 골프장부지 경계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3 | 송3 | 12 | 집산도로 | 555 | 대로2-송1 | 대로1-송3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중로 | 3 | 송4 | 12 | 집산도로 | 46 | 대로2-송1 | 골프장부지 경계 | 일반도로 | | |
| 신설 | 소로 | 1 | 송1 | 10 | 국지도로 | 75 | 중로1-송9 | 공공하수 처리시설 | 일반도로 | | |

2) 주차장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신설 | 1 | 주차장 | 6·8공구 내 | - | 12,770 | 12,770 | - | |
| 신설 | 2 | 주차장 | 6·8공구 내 | - | 6,986 | 6,986 | - | |
| 신설 | 3 | 주차장 | 6·8공구 내 | - | 8,133 | 8,133 | - | |
| 신설 | 4 | 주차장 | 6·8공구 내 | - | 3,786 | 3,786 | - | |
| 신설 | 5 | 주차장 | 6·8공구 내 | - | 3,455 | 3,455 | - | |

나. 공간시설

1) 녹지

○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신설 | 1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5,594 | 5,594 | - | |
| 신설 | 2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4,275 | 4,275 | - | |
| 신설 | 3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3,450 | 3,450 | - | |
| 신설 | 4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5,303 | 5,303 | - | |
| 신설 | 5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5,762 | 5,762 | - | |
| 신설 | 6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4,725 | 4,725 | - | |
| 신설 | 7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3,411 | 3,411 | - | |
| 신설 | 8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771 | 771 | - | |
| 신설 | 9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5,866 | 5,866 | - | |
| 신설 | 10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3,212 | 3,212 | - | |
| 신설 | 11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3,094 | 3,094 | - | |
| 신설 | 12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4,652 | 4,652 | - | |
| 신설 | 13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4,930 | 4,930 | - | |
| 신설 | 14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8,717 | 8,717 | - | |
| 신설 | 15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925 | 925 | - | |
| 신설 | 16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3,105 | 3,105 | - | |
| 신설 | 17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2,861 | 2,861 | - | |
| 신설 | 18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3,386 | 3,386 | - | |
| 신설 | 19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6,082 | 6,082 | - | |
| 신설 | 20 | 녹지 | 완충녹지 | 68공구 내 | - | 2,029 | 2,029 | - | |
| 신설 | 1 | 녹지 | 연결녹지 | 68공구 내 | - | 3,503 | 3,503 | - | |
| 신설 | 2 | 녹지 | 연결녹지 | 68공구 내 | - | 2,936 | 2,936 | - | |
| 신설 | 3 | 녹지 | 연결녹지 | 68공구 내 | - | 15,751 | 15,751 | - | |
| 신설 | 4 | 녹지 | 연결녹지 | 68공구 내 | - | 2,526 | 2,526 | - | |
| 신설 | 5 | 녹지 | 연결녹지 | 68공구 내 | - | 1,761 | 1,761 | - | |
| 신설 | 6 | 녹지 | 연결녹지 | 68공구 내 | - | 1,100 | 1,100 | - | |
| 신설 | 7 | 녹지 | 연결녹지 | 68공구 내 | - | 1,100 | 1,100 | - | |

2) 공원

○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도면 표시번호 | 공원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신설 | 근1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89,966 | 189,966 | - | |
| 신설 | 근2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89,966 | 89,966 | - | |
| 신설 | 근3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5,091 | 15,091 | - | |
| 신설 | 근4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9,881 | 19,881 | - | |
| 신설 | 근5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7,239 | 17,239 | - | |
| 신설 | 근6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45,402 | 45,402 | - | |
| 신설 | 근7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87,809 | 87,809 | - | |
| 신설 | 근8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2,923 | 2,923 | - | |
| 신설 | 근9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4,780 | 14,780 | - | |
| 신설 | 근10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7,022 | 17,022 | - | |
| 신설 | 근11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8,788 | 18,788 | - | |
| 신설 | 근12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8,125 | 18,125 | - | |
| 신설 | 근13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07,594 | 107,594 | - | |
| 신설 | 근14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14,521 | 14,521 | - | |
| 신설 | 근15 | 공원 | 근린공원 | 68공구 내 | - | 59,373 | 59,373 | - | |
| 신설 | 소1 | 공원 | 소공원 | 68공구 내 | - | 10,804 | 10,804 | - | |
| 신설 | 수1 | 공원 | 수변공원 | 68공구 내 | - | 251,583 | 251,583 | - | |
| 신설 | 수2 | 공원 | 수변공원 | 68공구 내 | - | 69,600 | 69,600 | - | |
| 신설 | 수3 | 공원 | 수변공원 | 68공구 내 | - | 731,865 | 731,865 | - | |

다. 유통 및 공급시설

1) 공동구

○ 공동구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위 치 | | | 연장 (km) | 폭원 (m)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| | | 기 점 | 종 점 | 주요경과지 | | | | |
| 신설 | 1 | 공동구 | 대로1-송1 | 6·8공구경계 | 제1호근린공원 | 0.9 | 4.9 | - | |
| 신설 | 2 | 공동구 | 중로1-송1 | 광로2-14 | - | 0.4 | 4.9 | - | |
| 신설 | 3 | 공동구 | 제2호근린공원 | 대로1-송2 | 151인천타워 | 0.8 | 6.9 | - | |
| 신설 | 4 | 공동구 | 광로2-14 | 대로2-송1 | 대로3-송3 | 0.8 | 6.9 | - | |
| 신설 | 5 | 공동구 | 대로1-송2 | 6공구경계 | 인천대교 | 3.7 | 4.9~6.9 | | |

라. 공공·문화체육시설

1) 공공청사

○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신설 | 1 | 공공청사 | 공공청사 | 6·8공구 내 | - | 1,000 | 1,000 | - | 파출소 |
| 신설 | 2 | 공공청사 | 공공청사 | 6·8공구 내 | - | 2,900 | 2,900 | - | 주민센터 |
| 신설 | 3 | 공공청사 | 공공청사 | 6·8공구 내 | - | 13,000 | 13,000 | - | 국제소방서 |

2) 학교

○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신설 | 1 | 학교 | 초등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349 | 12,349 | - | |
| 신설 | 2 | 학교 | 초등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318 | 12,318 | - | |
| 신설 | 3 | 학교 | 초등학교 | 68공구 내 | - | 11,867 | 11,867 | - | |
| 신설 | 4 | 학교 | 초등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687 | 12,687 | - | |
| 신설 | 5 | 학교 | 초등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999 | 12,999 | - | |
| 신설 | 6 | 학교 | 중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054 | 12,054 | - | |
| 신설 | 7 | 학교 | 중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340 | 12,340 | - | |
| 신설 | 8 | 학교 | 중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678 | 12,678 | - | |
| 신설 | 9 | 학교 | 고등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329 | 12,329 | - | |
| 신설 | 10 | 학교 | 고등학교 | 68공구 내 | - | 12,641 | 12,641 | - | |
| 신설 | 11 | 학교 | 고등학교 | 68공구 내 | - | 30,000 | 30,000 | - | 예술고교 |

마. 환경기초시설

1) 하수도시설

○ 하수도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신설 | 오1 | 하수도 | 오수중계펌프장 | 68공구 내 | - | 1,200 | 1,200 | - | |
| 신설 | 오2 | 하수도 | 오수중계펌프장 | 68공구 내 | - | 1,200 | 1,200 | - | |
| 신설 | 하 | 하수도 | 공공하수처리시설 | 68공구 내 | - | 55,010 | 55,010 | - | |

2) 폐기물처리시설

○ 폐기물처리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도면 표시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 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 |
| 신설 | 생1 | 폐기물 처리시설 |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| 68공구 내 | - | 3,000 | 3,000 | - | |
| 신설 | 생2 | 폐기물 처리시설 |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| 68공구 내 | - | 2,960 | 2,960 | - | |

2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단독주택용지(D)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지 | | 비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|
| | | | 위치 | 면적(㎡) | |
| D1 | D1 | 11,756 | D1 | 11,756 | |
| D2 | D2 | 14,911 | D2 | 14,911 | |
| D3 | D3 | 46,123 | D3 | 46,123 | |
| D4 | D4 | 47,493 | D4 | 47,493 | |
| 계 | - | 120,283 | - | 120,283 | |

2) 공동주택용지(A)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지 | | 비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|
| | | | 위치 | 면적(㎡) | |
| A1 | A1 | 180,802 | A1 | 180,802 | |
| A2 | A2 | 74,092 | A2 | 74,092 | |
| A3 | A3 | 122,156 | A3 | 122,156 | |
| A4 | A4 | 105,024 | A4 | 105,024 | |
| A5 | A5 | 68,643 | A5 | 68,643 | |
| A6 | A6 | 55,286 | A6 | 55,286 | |
| A7 | A7 | 63,143 | A7 | 63,143 | |
| A8 | A8 | 28,063 | A8 | 28,063 | |
| A9 | A9 | 62,894 | A9 | 62,894 | |
| A10 | A10 | 111,379 | A10 | 111,379 | |
| A11 | A11 | 53,034 | A11 | 53,034 | |
| A12 | A12 | 59,506 | A12 | 59,506 | |
| A13 | A13 | 51,612 | A13 | 51,612 | |
| A14 | A14 | 66,067 | A14 | 66,067 | |
| A15 | A15 | 59,641 | A15 | 59,641 | |
| A16 | A16 | 82,564 | A16 | 82,564 | |
| A17 | A17 | 107,752 | A17 | 107,752 | |
| 계 | - | 1,351,658 | - | 1,351,658 | |

3) 주상복합용지(M)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M1 | M1 | 79,447 | M1 | 79,447 | |
| M2 | M2 | 64,284 | M2 | 64,284 | |
| M3 | M3 | 37,480 | M3 | 37,480 | |
| M4 | M4 | 40,999 | M4 | 40,999 | |
| M5 | M5 | 26,884 | M5 | 26,884 | |
| M6 | M6 | 170,775 | M6 | 170,775 | |
| 계 | - | 419,869 | - | 419,869 | |

4) 일반상업용지(R)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R1 | R1 | 44,171 | R1 | 44,171 | |
| R2 | R2 | 158,905 | R2 | 158,905 | |
| R3 | R3 | 14,557 | R3 | 14,557 | |
| R4 | R4 | 8,505 | R4 | 8,505 | |
| R5 | R5 | 37,741 | R5 | 37,741 | |
| R6 | R6 | 11,710 | R6 | 11,710 | |
| R7 | R7 | 58,558 | R7 | 58,558 | |
| 계 | - | 334,147 | - | 334,147 | |

5) 국제업무용지(B)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B1 | B1 | 32,271 | B1 | 32,271 | |
| B2 | B2 | 19,190 | B2 | 19,190 | |
| 계 | - | 51,461 | - | 51,461 | |

6) 기타시설용지

○ 학교용지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지 | | 비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|
| | | | 위치 | 면적(㎡) | |
| ES1 | - | 12,349 | ES1 | 12,349 | |
| ES2 | - | 12,318 | ES2 | 12,318 | |
| ES3 | - | 11,867 | ES3 | 11,867 | |
| ES4 | - | 12,687 | ES4 | 12,687 | |
| ES5 | - | 12,999 | ES5 | 12,999 | |
| MS1 | - | 12,054 | MS1 | 12,054 | |
| MS2 | - | 12,340 | MS2 | 12,340 | |
| MS3 | - | 12,678 | MS3 | 12,678 | |
| HS1 | - | 12,329 | HS1 | 12,329 | |
| HS2 | - | 12,641 | HS2 | 12,641 | |
| HS3 | - | 30,000 | HS3 | 30,000 | |
| 계 | - | 154,262 | - | 154,262 | |

○ 공공청사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지 | | 비고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|
| | | | 위치 | 면적(㎡) | |
| PS1 | - | 1,000 | PS1 | 1,000 | |
| C01 | - | 2,900 | C01 | 2,900 | |
| FS1 | - | 13,000 | FS1 | 13,000 | |
| 계 | - | 16,900 | - | 16,900 | |

○ 문화시설용지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지 | | 비고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|--------|----|
| | | | 위치 | 면적(㎡) | |
| C1 | - | 11,429 | C1 | 11,429 | |
| 계 | - | 11,429 | - | 11,429 | |

○ 체육시설용지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S1 | - | 139,038 | S1 | 139,038 | |
| S2 | - | 223,292 | S2 | 223,292 | |
| S3 | - | 368,290 | S3 | 368,290 | |
| 계 | - | 730,620 | - | 730,620 | |

○ 종교용지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RL1 | - | 2,903 | RL1 | 2,903 | |
| 계 | - | 2,903 | - | 2,903 | |

○ 주유소용지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GS1 | - | 1,600 | GS1 | 1,600 | |
| 계 | - | 1,600 | - | 1,600 | |

○ 공공하수처리장용지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ST1 | - | 55,010 | ST1 | 55,010 | |
| 계 | - | 55,010 | - | 55,010 | |

○ 오수중계펌프장용지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BP1 | - | 1,200 | BP1 | 1,200 | |
| BP2 | - | 1,200 | BP2 | 1,200 | |
| 계 | - | 2,400 | - | 2,400 | |

○ 폐기물처리시설용지(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)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GL1 | - | 3,000 | GL1 | 3,000 | |
| GL2 | - | 2,960 | GL2 | 2,960 | |
| 계 | - | 5,960 | - | 5,960 | |

○ 주차장용지

| 도면번호 | 가구번호 | 면적(㎡) | 획 지 |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위 치 | 면 적(㎡) | |
| PL1 | - | 12,770 | PL1 | 12,770 | |
| PL2 | - | 6,986 | PL2 | 6,986 | |
| PL3 | - | 8,133 | PL3 | 8,133 | |
| PL4 | - | 3,786 | PL4 | 3,786 | |
| PL5 | - | 3,455 | PL5 | 3,455 | |
| 계 | - | 35,130 | - | 35,130 | |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단독주택용지(D)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-|-------|--|---|
| D1~D4 | 용도 | 허용용도 | ◦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단독주택(다중주택, 다가구 주택 제외) ◦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의한 단독형집합주택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50% 이하 | |
| | 용 적 률 | ◦10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18m 이하 | |
| | 배 치 | ◦대지내 발생하는 공지의 일부를 가로변에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 ◦주변 근린공원과 단지 내 Open Space Green Network 연계 ◦공원, 골프장 등의 조망권 고려 및 건축물 주향의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| |
| | 형 태 | ◦지역색 도입을 통해 단지의 Identity 창출을 유도함과 도시에 전체 단지의 전원적인 쾌적한 고급 이미지 부여 | |
| | 건축선 | - | |

※ 단독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

| 구 분 | 면 적(㎡) | 주택평균면적(㎡/호) | 수용호수(세대) | 인구수(인)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D1 | 11,756 | 600 | 20 | 53 |
| D2 | 14,911 | 600 | 25 | 66 |
| D3 | 46,123 | 600 | 76 | 202 |
| D4 | 47,493 | 600 | 79 | 211 |
| 계 | 120,283 | - | 200 | 532 |

주) 가구당 인구수 : 2.66인,

주택 평균 면적 : 규제대상이 아니며, 수용호수, 최고높이,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 할 수 없음

2) 공동주택용지(A)

| 도면번호 | 구 분 | 계 획 내 용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1 ~ A17 | 용도 | 허용용도 |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| |
| | | 불허용도 |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
| | 건 폐 율 | | 40% 이하 | |
| | 용 적 륜 | 기 준 용 적 륜 | 160% 이하 | A12, A15 |
| | | | 170% 이하 | A1, A5, A6 |
| | | | 180% 이하 | A17 |
| | | | 190% 이하 | A7, A10 |
| | | | 200% 이하 | A8, A9, A11, A13, A14, A16 |
| | | 허 용 용 적 륜 | 230% 이하 | A2, A3, A4 |
| | | | 165% 이하 | A12, A15 |
| | | | 175% 이하 | A1, A5, A6 |
| | | | 185% 이하 | A17 |
| | | | 195% 이하 | A7, A10 |
| | 높 이 | 205% 이하 | A8, A9, A11, A13, A14, A16 | |
| | | 235% 이하 | A2, A3, A4 | |
| | | 50m 이하 | A5, A6 | |
| | | 80m 이하 | A12, A15 | |
| | | 110m 이하 | A1, A11, A13, A14, A16, A17 | |
| | | 120m 이하 | A7, A10 | |
| | 배 치 | 130m 이하 | A8, A9 | |
| 180m 이하 | | A2, A3, A4 | | |
| 형 태 | 학교와 인접 구간에 배치되는 주호동은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배치함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공동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5층 이상 : 탑상형(단변과 장변의 비 1:2 이하) - 주호동의 형태 : 입면상 차별화된 외관 조성 - 지붕(판상형) :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 지붕 권장 - 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함 ◦단지 내 부대·복리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대복리시설 :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를 권장함 - 어린이놀이터 : 분산배치하되,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- 근린생활시설 : 단지 내 진출입구변에 배치를 권장함 | | | |
| 건축선 | ◦건축한계선 | | | |
| | - 3m 건축한계선 : 20m 이하 도로변 | | | |
| | - 6m 건축한계선 : 20m 초과 35m 미만 도로변 | | | |
| |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| | | |
| | | -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별도의 이격거리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| | |

□ 공동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

| 구 분 | 면 적 (㎡) | 주택평균 면적(㎡/호) | 수용호수 (세대) | 인구수 (인)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A1 | 180,802 | 128 | 2,389 | 6,355 |
| A2 | 74,092 | 128 | 1,330 | 3,538 |
| A3 | 122,156 | 128 | 2,180 | 5,799 |
| A4 | 105,024 | 128 | 2,000 | 5,320 |
| A5 | 68,643 | 128 | 432 | 1,149 |
| A6 | 55,286 | 128 | 282 | 750 |
| A7 | 63,143 | 128 | 938 | 2,495 |
| A8 | 28,063 | 128 | 436 | 1,160 |
| A9 | 62,894 | 128 | 991 | 2,636 |
| A10 | 111,379 | 128 | 1,656 | 4,405 |
| A11 | 53,034 | 128 | 805 | 2,141 |
| A12 | 59,506 | 128 | 743 | 1,976 |
| A13 | 51,612 | 128 | 811 | 2,157 |
| A14 | 66,067 | 128 | 1,034 | 2,750 |
| A15 | 59,641 | 128 | 742 | 1,974 |
| A16 | 82,564 | 128 | 1,289 | 3,429 |
| A17 | 107,752 | 128 | 1,441 | 3,834 |
| 계 | 1,351,658 | - | 19,499 | 51,868 |

주) 가구당 인구수 : 2.66인

주택 평균 면적은 규제대상이 아니며, 수용호수, 최고높이,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 할 수 없음

□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(Incentive)

| 인센티브 가산조항 | | 인센티브(%)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| | 2 | ·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|
| 에너지효율등급 | 1등급 | 3 | ·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|
| | 2등급 | 2 | |
| | 3등급 | 1 | |

*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인센티브(인센티브 가산조항 준수시)

3) 주상복합용지(M)

| 도면번호 | 구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-|-------|--|--|
| M1~M5 | 용도 | 허용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공동주택 :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% 이하 인것 ◦제1종근린생활시설 ◦제2종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에 한함) ◦교육연구시설(라목에 한함) ◦운동시설(가목 및 나목에 한함) ◦업무시설 |
| | | 불허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허용도 |
| | 건 폐 율 | 60% 이하 | |
| | 용 적 륜 | M1, M2 | 510% 이하 |
| | | M3~M5 | 330% 이하 |
| | 높 이 | 230m 이하 | |
| | 배 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배치를 권장함 ◦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◦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| |
| | 형 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주거동의 구조 향후의 생활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환경요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다음의 융통형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 도입을 권장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-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-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-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◦주거동의 형태 주거동의 형태 :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을 조성하며, 탑상형 권장 건축설비 및 구조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하도록 함 | |

| 도면번호 | 구분 | 계획내용 |
|-------|-----|--|
| M1~M5 | 형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입면변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동의 입면 : 색채, 창호·발코니 등의 구조물,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변화 권장 -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,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,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◦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시형 벽면 : 도로 및 보행자도로 접한 벽면적의 50%이상 - 투시형 셔터 :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◦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,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(단,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·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함) ◦1층의 바닥높이 :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|
| |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m 건축한계선 : 20m 이하 도로변 - 6m 건축한계선 : 20m 초과 35m 미만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이상 간선가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|

□ 주상복합용지 계획인구 지표

| 구분 | 면적 (㎡) | 주택평균 면적(㎡/호) | 수용호수 (세대) | 인구수 (인)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M1 | 79,447 | 160 | 2,026 | 5,389 |
| M2 | 64,284 | 160 | 1,650 | 4,389 |
| M3 | 37,480 | 160 | 626 | 1,665 |
| M4 | 40,999 | 160 | 689 | 1,832 |
| M5 | 26,884 | 160 | 397 | 1,056 |
| 계 | 249,094 | - | 5,388 | 14,331 |

주) 가구당 인구수 : 2.66인

주택 평균 면적은 규제대상이 아니며, 수용호수, 최고높이,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 할 수 없음

4) 151인천타워용지(M6)

| 도면번호 | 구분 | 계획내용 |
|------|-----|--|
| M6 | 용도 | 허용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공동주택(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%이하인 것) ◦제1종근린생활시설 ◦제2종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) ◦문화 및 집회시설 ◦판매시설 ◦의료시설(가목에 한함) ◦교육연구시설(라목에 한함) ◦운동시설(가목 및 나목에 한함) ◦업무시설 ◦숙박시설(가목 및 나목에 한함) ◦방송통신시설 ◦관광휴게시설(가목 및 나목에 한함) ◦위락시설 |
| | | 불허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폐율 | ◦50% 이하 |
| | 용적률 | ◦350% 이하 |
| | 높이 | ◦650m 이하 |
| | 배치 | ◦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◦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|
| | 형태 | ◦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,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|
| | 건축선 | ◦건축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이상 간선가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

□ 151인천타워용지 계획인구 지표

| 구분 | 면적 (㎡) | 주택평균 면적(㎡/호) | 수용호수 (세대) | 인구수 (인)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M6 | 170,775 | 220 | 477 | 1,269 |
| 계 | 170,775 | - | 477 | 1,269 |

주) 가구당 인구수 : 2.66인

주택 평균 면적은 규제대상이 아니며, 수용호수, 최고높이,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 할 수 없음

5) 일반상업용지(R)

| 도면번호 | 구분 | 계획내용 |
|------|-----|--|
| R1 | 용도 | 허용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 ◦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제외) ◦판매시설 ◦업무시설 ◦운동시설(가목에 한함,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◦관광휴게시설(가목 및 나목에 한함) |
| | | 불허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허용용도 이외에 용도 |
| | 건폐율 | ◦60% 이하 |
| | 용적률 | ◦800% 이하 |
| | 높이 | ◦100m 이하 |
| | 배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의 벽면은 접한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◦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곳에 면하도록 하되,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|
| | 형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송도국제도시 내에서의 입지적 특성 및 단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높이 및 형태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◦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 단차 10cm 이하 적용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◦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, 옥상조경 권장 ◦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, 담장설치는 불허 |
| |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이상 간선가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|
| R3,R4, R5,R6 | 용도 | 허용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 ◦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제외) ◦판매시설(다목에 한함) ◦운동시설(가목에 한함,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◦업무시설(단, 1,2층 불허) ◦관광휴게시설(가목 및 나목에 한함) |
| | | 불허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허용용도 이외에 용도 |
| | 건 폐 율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60% 이하 |
| | 용 적 륜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300% 이하 |
| | 높 이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70m 이하 |
| | 배 치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의 벽면은 접한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◦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곳(예 진입광장, 공공보행통로 등)에 면하도록 하되,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|
| | 형 태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송도국제도시 내에서의 입지적 특성 및 단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높이 및 형태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◦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0cm 이하 적용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◦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, 옥상조경 권장 ◦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, 담장설치는 불허 |
| | 건축선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-----|--|--|
| R7 | 용도 | 허용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 ◦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제외) ◦판매시설(다목에 한함) ◦숙박시설(나목에 한함) |
| | | 불허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허용용도 이외에 용도 |
| | 건 폐 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60% 이하 | |
| | 용 적 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600% 이하 | |
| | 높 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100m 이하 | |
| | 배 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의 벽면은 접한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◦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곳에 면하도록 하되,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| |
| | 형 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송도국제도시 내에서의 입지적 특성 및 단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높이 및 형태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◦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 단차 10cm 이하 적용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◦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, 옥상조경 권장 ◦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, 담장설치는 불허 | |
| |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 |

6) 국제업무용지(B)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-|--|--|--|
| B1~B2 | 용도 | 허용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제1종 근린생활시설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(자목의 장의사·총포판매사 제외) ◦업무시설 ◦판매시설(다목에 한함) ◦운동시설(가목에 한함)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가목 및 라목에 한함) ◦교육연구시설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폐율 | ◦70% 이하 | |
| | 용적률 | ◦50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180m 이하 | |
| | 배 치 | ◦기단부의 벽면은 보행자전용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며, 주출입구가 보행자전용도로로 향하게 하여 공공성 제고 | |
| | 형 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형태(고층부 및 옥상부) 및 외관(입면)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◦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, 색채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관성을 지켜야 함 ◦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를 사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시형 벽면 :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%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- 투시형 서터 :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◦옥상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◦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. 단,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◦1층 바닥높이 :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5cm 이내로 함 | |
|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이상 간선가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 | |

7) 기타시설용지

○ 학교용지

| 도면번호 | 구분 | 계획내용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ES1~ES5, MS1~MS3, HS1~HS3 | 용도 | 허용용도 | ◦교육연구시설(가목에 한함)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폐율 | ◦30% 이하 | |
| | 용적률 | ◦200% 이하 | |
| | 높이 | ◦50m 이하 | |
| | 배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 ◦교사동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별도의 이격거리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◦폭 20m 이상 도로변에의 강의동/교실동의 배치를 지양, 소음과 무관한 시설 배치 | |
| | 형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시설의 성격을 부각할 수 있는 형태 권장 ◦옥상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| |

○ 공공청사

| 도면번호 | 구분 | 계획내용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PS1, C01, FS1 | 용도 | 허용용도 | ◦제1종근린생활시설(바목에 한함) |
| | | 불허용도 | ◦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|
| | 건폐율 | ◦60% 이하 | |
| | 용적률 | ◦250% 이하 | |
| | 높이 | ◦30m 이하 : PS1, C01 | |
| | | ◦50m 이하 : FS1 | |
| | 배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◦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| |
| | 형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◦옥상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◦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◦1층 바닥높이 : 보행자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, 이 경우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| |
|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초과 도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 | |

○ 문화시설용지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C1 | 용도 | 허용용도 | ◦교육연구시설(바목에 한함)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60% 이하 | |
| | 용 적 률 | ◦25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70m 이하 | |
| | 배 치 | ◦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◦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| |
| | 형 태 |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◦옥상부분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◦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◦1층 바닥높이 : 보행자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, 이 경우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| |
| | 건축선 | - | |

○ 체육시설용지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S1~S3 | 용도 | 허용용도 | ◦운동시설(골프장) 및 부대시설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20% 이하 | |
| | 용 적 률 | ◦80% 이하 | |
| | 높 이 | - | |
| | 배 치 | ◦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◦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| |
| | 형 태 |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◦옥상부분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◦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◦1층 바닥높이 : 보행자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, 이 경우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| |

○ 종교용지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-|
| RL1 | 용도 | 허용용도 | ◦종교시설(가목에 한함)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60% 이하 | |
| | 용 적 륜 | ◦25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40m 이하(종탑 포함) | |
| | 배 치 | ◦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| |
| | 형 태 |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◦옥상부분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◦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◦1층 바닥높이 : 보행자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, 이 경우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| |
| | 건축선 | ◦건축한계선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이상 간선가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 |

○ 주유소용지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GS1 | 용도 | 허용용도 | ◦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(가목에 한함)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60% 이하 | |
| | 용 적 륜 | ◦25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30m 이하 | |
| | 배 치 | ◦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| |
| | 형 태 |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◦옥상부분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◦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◦1층 바닥높이 : 보행자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, 이 경우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| |
| | 건축선 | ◦건축한계선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 |

○ 공공하수처리장용지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-----|--|---|
| ST1 | 용도 | 허용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도시계획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◦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◦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에어로빅장 ◦운동시설 ◦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◦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20% 이하 | |
| | 용 적 륜 | ◦8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20m 이하 | |
| | 배 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1층 바닥높이는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20cm 이내로 함 ◦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시설(관리동)을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격 배치 | |
| | 형 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◦지상 및 옥상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지상 및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 확보 | |
| | 건축선 | - | |

○ 오수중계펌프장용지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-|
| BP1, BP2 | 용도 | 허용용도 | ◦하수도(오수중계펌프장)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20% 이하 | |
| | 용 적 륜 | ◦8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20m 이하 | |
| | 배 치 | ◦1층 바닥높이는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20cm 이내로 함 | |
| | 형 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◦지상 및 옥상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지상 및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 확보 | |
| |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이상 간선가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 |

○ 폐기물처리시설용지(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)

| 도면번호 | 구분 | | 계획내용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|
| GL1, GL2 | 용도 | 허용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(가목에 한함) -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처리장 및 부속시설 |
| | | 불허용도 | °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폐율 | | °20% 이하 |
| | 용적률 | | °80% 이하 |
| | 높이 | | °20m 이하 |
| | 배치 | | °1층 바닥높이는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5cm 이내로 함 |
| | 형태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°옥상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|
| | 건축선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이상 간선가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

○ 주차장용지

| 도면번호 | 구분 | | 계획내용 | |
|---------|-----|--|---|---------|
| PL2~PL5 | 용도 | 허용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주용도 : 지상층 연면적의 70%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차관련시설(가목의 주차장에 한함) °부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옥외골프연습장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장의사, 총포판매사 제외) - 판매시설(다목에 한함) | |
| | | 불허용도 | °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
| | 건폐율 | | °90% 이하 | |
| | 용적률 | | PL2, PL3 | 300% 이하 |
| | | | PL4, PL5 | 330% 이하 |
| | 높이 | | °40m 이하 | |
| | 배치 | | °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| |
| | 형태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°옥상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-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| |
| 건축선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m 건축한계선 :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- 9m 건축한계선 : 35m 이상 간선가로변 -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| | |

8) 특별계획구역(R2, PL1)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-----|----------|--|
| R2 | 용도 | 허용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 ◦문화 및 집회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목(공연장 중 극장, 영화관에 한함) - 나목(집회장 중 예식장에 한함) - 라목(전시장 중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기념관, 박람회장에 한함) ◦판매시설(다목에 한함) ◦업무시설(오피스텔, 단, 1,2층 불허) ◦의료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목(병원 중 치과병원에 한함) ◦교육연구시설(라목에 한함) ◦노유자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목(아동 관련 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한함) ◦관광휴게시설(가목 및 나목에 한함) |
| | | 불허 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에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60% 이하 | |
| | 용 적 륜 | ◦50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70m 이하 | |

| 도면번호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|
| PL1 | 용도 | 허용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주용도 : 지상층 연면적의 70%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차관련시설(가목의 주차장에 한함) ◦부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옥외골프연습장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장의사, 총포판매사 제외) - 판매시설(다목에 한함) |
| | | 불허용도 | 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건 폐 율 | ◦90% 이하 | |
| | 용 적 륜 | ◦500% 이하 | |
| | 높 이 | ◦40m 이하 | |

다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| 도면번호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|--|
| D1~D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동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 속도 감속, 서비스 동선 내 불법주차 방지 등 단독주택 정온화기법을 통하여 단지내 교통환경개선 -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토록 함 - 차도율 40%이하 - 단지내 도로는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◦보행동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도폭은 최소 2.0m 이상 확보 -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 ◦단지내 주차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대당 1.5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▪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|
| A1~A4, A7~A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동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행통로 및 공원으로 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조성토록 함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. -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토록 함 - 차도율 40%이하 -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%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◦보행동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등과 연계 - 학교, 공원 등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조성 - 보도폭은 최소 2.0m 이상 확보 -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 ◦단지내 주차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하며, 지하에 설치 유도 ▪단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단지내도로 및 주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의 중심성을 강화 권장 ◦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 유도 ◦공공보행통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원, 학교 등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보행동선 단축도모 ▪단지내 시설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장 및 울타리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단,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담장, 울타리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 토지이용 상태를 고려하여 설치위치에 따라 형태, 높이,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- 도로에 면한 담장 : 투시형 담장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, 높이 1.2m 이하 ◦자전거보관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호동 단위별 또는 2~3개 주호동별로 자전거보호대를 설치 |

| 도면번호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-------|
|------|---------|

A5,
A6

- 교통처리계획
 - 차량동선
 - 보행통로 및 공원으로 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조성토록 함
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.
 -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토록 함
 - 차도율 40%이하
 -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%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
 - 보행동선
 - 주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등과 연계
 - 학교, 공원 등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조성
 - 보도폭은 최소 2.0m 이상 확보
 -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
 - 단지내 주차장
 -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하며, 지하에 설치 유도
- 단지내 공지계획
 - 전면공지
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
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
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
 - 단지내도로 및 주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의 중심성을 강화 권장
 -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 유도
 - 공공보행통로
 - 공원, 학교 등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보행동선 단축도모
 -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대지내조경25m 조성
- 단지내 시설물
 - 담장
 - 담장 및 울타리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단,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담장, 울타리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 토지이용 상태를 고려하여 설치위치에 따라 형태, 높이,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
 - 도로에 면한 담장 : 투시형 담장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, 높이 1.2m 이하
 - 자전거보관대
 - 주호동 단위별 또는 2~3개 주호동별로 자전거보호대를 설치

M1~M5

- 교통처리계획
 - 차량진출입
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
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
 -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
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
 -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
 -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
- 대지내 공지계획
 - 전면공지
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
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
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
 - 공개공지
 -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,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

| 도면번호 | 계 획 내 용 |
|------|--|
| M6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를 우선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공개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,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| R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공개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,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
| 도면번호 | 계 획 내 용 |
|-------|---|
| R3~R6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공공보행통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4미터 폭 이상으로 설치하되 위치 및 선형은 조정 가능함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| R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| B1~B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
| 도면번호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ES1~ES5, MS1~MS3, HS1~HS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함 |
| PS1, CO1, FS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 진출입 불허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| C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 진출입 불허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◦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
| 도면번호 | 계 획 내 용 |
|-------|--|
| S1~S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| RL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 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|
| GS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|

| 도면번호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---|--|
| ST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의 환경영향(악취, 소음, 미관 등)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 등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- 주차장이 도로면에 면한 부분은 차폐조경(폭 2m 이상) 조성할 것 ▪담장의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m 이상의 환경정화수(상록수, 침엽수종 등)로 조성 ▪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공원 조성계획과 조화롭게 조경 시행 |
| BP1, BP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의 환경영향(악취, 소음, 미관 등)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 등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- 주차장이 도로면에 면한 부분은 차폐조경 조성 ▪담장의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m 이상의 환경정화수(상록수, 침엽수종 등)로 조성 |

| 도면번호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---|---|
| GL1, GL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 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의 환경영향(악취, 소음, 미관 등)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 등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▪ 담장의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m 이상의 환경정화수(상록수, 침엽수종 등)로 조성 ▪ 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공원 조성계획과 조화롭게 조경 시행 |
| PL2~PL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차량진출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,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-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,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-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◦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◦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▪ 대지내 공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면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-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-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을 따라야 하며,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◦ 차폐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차장의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조성 - 차폐조경은 다음 기준의 식수대를 설치하고 조례 기준에 따라 관목 및 교목 식재 |